

의안번호	2209744
의 퇴 인	정희용 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 계 번호	25B223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현행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 조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억 4,600만원(연평균 8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복원성 승인 및 유지 (안 제3조의2)	135	140	1,116	1,161	1,894	4,446	889

주: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10년간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건조검사 물량을 기준으로, 건조검사, 중간검사, 도면승인, 현장검사 등의 업무 증가량을 예측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검사 대상 선박 건조수, 검사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함(제1항) 1. 배의 길이가 <u>12미터</u> 이상인 어선 ※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기준을 현행 배 길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변경	의무규정
2	안 제31조(국가어선정보포털 등의 구축·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u>국가어선정보포털</u>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국가어선정보포털</u>(이하 “국가어선정보포털”이라 함)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2항)	재량/의무 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u>국가어선정보포털</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3항) 4. 그 밖에 <u>국가어선정보포털</u>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u>국가어선정보포털</u>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u>국가어선정보포털</u>의 관리·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제4항) ※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및 유지)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31조(<u>국가어선정보 포털</u> 등의 구축·운영)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고, 어선거래 외에 어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어선거래시스템 유지보수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임 <어선거래시스템 개요> – 구축시기 및 비용: '14년부터 개발 착수, '17년 구축(770.3백만원), '18년부터는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 – 주요기능: 어선중개업자가 매물을 등록하여 거래하는 시스템(www.어선거래.kr) – 2025년 기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운영 예산: 332백만원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복원성 승인 및 유지(안 제3조의2)
 - 개정안은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복원성 시험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어선법 시행규칙²⁾은 어선의 소유자가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①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②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어선을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2025년 3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9	3.8	3.8	3.8	3.8

- 2) 「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④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법」 제41조³⁾에 따라 복원성 승인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진행하고 있음

- 복원성 승인 업무절차는 ①어선 소유자의 복원성 자료(초안) 제출, ②공단에서 복원성 시험 실시, ③복원성 자료(초안) 검증 후 복원성 자료(최종)를 승인하는 순으로 진행됨
 - 공단에서 실시하는 복원성 시험은 도면승인과 현장검사로 구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원성 승인 건수는 연평균 674건이고, 소요 예산은 연평균 13억 5,700만원, 복원성 수수료⁴⁾ 수입은 연평균 1억 1,500만원으로, 복원성 승인 소요 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을 차감한 실소요 예산은 연평균 12억 4,200만원임

[표 2] 최근 3년간 복원성 승인 현황

구분	'22년	'23년	'24년	평균
복원성 승인 건수(건)	868	650	504	674
소요 예산(백만원, C=A×B)	1,696	1,334	1,041	1,357
- 투입인력(명, A)	28.5	21.3	16.5	22.1
- 공단 평균연봉(천원, B)	59,503	62,619	63,091	61,738
복원성 수수료 수입(백만원, D)	148	111	86	115
실소요 예산(백만원, C-D)	1,548	1,223	955	1,242

자료: 해양수산부

3) 「어선법」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 및 제5호의2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승인
1의2. ~ 7. (생략)

4) 「어선법」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원성 검사대상 어선의 수는 최근 10년간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건조검사 물량(연평균 450.7척)⁵⁾과 개정안 부칙의 경과조치를 고려하면, 2026년 40척, 2030년 750척 등으로 예상됨

-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이 법 시행 후에 건조된 어선으로서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길이 20미터 이상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검사 물량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0척임
-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위한 검사를 「어선법」 제21조제1항⁶⁾에 따른 최초정기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함)와 중간검사 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중간검사 시 현장검사는 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100%에 대하여, 도면승인

5) 최근 10년간 길이 12미터이상 24미터미만 건조검사 물량

(단위: 척)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464	571	643	614	541	436	384	352	284	218	450.7

자료: 해양수산부

6)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검사는 50%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엔진, 발전기 등 선박에 설치되는 물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과거 검사 경험치를 참고하여 정기 검사 사이에 실시하는 중간검사에서는 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50%에 대해 복원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중간검사 시 실시하는 현장검사는 기존 복원성 승인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가 검사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경사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추가 검사는 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100%에 대해, 변경사항 반영 경사시험 등은 복원성의 변경이 발생한 선박(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50% 가정)에 대해 실시하나, 업무량 산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사항 반영 경사시험 등을 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100%에 대해 필요 업무시간의 50%를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개정안에 따른 복원성 승인 추가 예상 물량

(단위: 건)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복원성 승인 대상 ¹⁾		40		40		480.7		480.7		750 ³⁾	
도면승인 업무 대상	건조검사	40	40	40	40	450.7	470.7	450.7	470.7	450.7	676.1
	중간검사 ²⁾	—		—		20		20		225.4	
현장검사 업무 대상	건조검사	40	40	40	40	450.7	490.7	450.7	490.7	450.7	901.4
	중간검사 ²⁾	—		—		40		40		450.7	

주: 1) 개정안에 따른 복원성 승인 검사 증가 업무량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수는 도면승인 업무 대상과 현장검사 업무 대상의 평균으로 함

2) 중간검사 시 현장검사는 직전 정기검사 물량의 100%에 대하여, 도면승인 검사는 50%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3) 도면승인 업무 대상과 현장검사 업무 대상을 평균하면 788.8척이나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750척으로 보정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른 복원성 승인 추가 예상 물량 및 도면승인·현장검사 업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은 2026년 2명, 2030년 25명 등으로 예상됨

[표 4]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인력 산출

구 분	검사물량		산출내역	소요인력	
2026년 및 2027년	40건	도면승인	○ 40척 x 54h = 2,160h - 복원성승인 등 검토: 44h - 신규제도 현장 안내: 10h	1.1명	2명
		현장검사	○ 40척 x 46h = 1,840h - 검사준비, 경사시험 등: 36h - 신규제도 현장 안내: 10h	0.9명	
2028년 및 2029년	480.7건	도면승인	○ 480.7척 x 40h = 19,228h - 복원성승인 등 검토(건조검사): 44h - 복원성승인 등 검토(정기적 검사 ¹⁾): 36h	9.6명	15.7명
		현장검사	○ 480.7척 x 25.5h = 12,257.85h - 경사시험 등 현장검사(건조검사): 36h - 경사시험 등 현장검사(정기적 검사 ¹⁾): 15h	6.1명	
2030년	750건	도면승인	○ 750척 x 40h = 30,000h - 복원성승인 등 검토(건조검사): 44h - 복원성승인 등 검토(정기적 검사 ¹⁾): 36h	15.0명	24.6명
		현장검사	○ 750척 x 25.5h = 19,125h - 경사시험 등 현장검사(건조검사): 36h - 경사시험 등 현장검사(정기적 검사 ¹⁾): 15h	9.6명	

주: 1) 정기적검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포함(건조검사 제외)

1.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연평균 근로시간 1995.8h 적용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에 공단 평균연봉⁷⁾을 적용하면, 개정안에 따라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에서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4억 4,600만원(연평균 8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7)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공단 평균연봉은 68,121천원임

[표 5] 복원성 승인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구분	'26	'27	'28	'29	'30	합계	연평균
복원성 승인 추가 건수(건)	40	40	480.7	480.7	750	1,791.4	358.3
소요 예산 (백만원, $C=A \times B$)	142	147	1,197	1,243	2,021	4,750	950
－ 투입인력 (명, A)	2	2	15.7	15.7	24.6	－	－
－ 공단 평균연봉 (천원, B)	70,778	73,467	76,259	79,157	82,165	－	－
복원성 수수료 수입 예상 (백만원, D)	7	7	82	82	128	306	61
실소요 예산 (백만원, $C-D$)	135	140	1,116	1,161	1,894	4,446	889

주: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10년간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건조검사 물량을 기준으로, 건조검사, 중간검사, 도면승인, 현장검사 등의 업무 증가량을 예측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검사 대상 선박 건조수, 검사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10년간 길이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건조검사 물량을 기준으로, 건조검사, 중간검사, 도면승인, 현장검사 등의 업무 증가량을 예측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검사 대상 선박 건조수, 검사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